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59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3
2. 군인·군무원에 대한 주거보조비 지원	10
※ 참고자료: 군무원 주거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
3. 회부연월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계획에 따라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의 경우 개인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의 증가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군무원이 제외되어 비교적 연봉이 낮은 초임 군무원에게는 군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군무원(1,320명 대상)의 99.2%가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83.7%는 시급하게 군무원의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군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복무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모든 군무원을 대상으로 군인과 동일한 주거지원 제도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1조 8,413억원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므로, 군무원의 임무·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격지·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주거지원 대상에 격지·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9조).

Ⅲ. 검토의견

현행 주거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은 군인에 한정되고 있는데, 「군인복지기본법」¹⁾에 따라 군관사·독신자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가 보유 또는 숙소 부족 등의 이유로 상기 2개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군인보수법」²⁾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개정안은 ① 현재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에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도 포함하는 한편, ① 상기 2개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주택수당이 아니라 ‘주거보조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개정안은 격자·오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군인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 정책과 동등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다. 월차임
- 2) 「군인보수법」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 2. (생략) <u><신설></u> 3. ~ 4.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u>군무원</u> ”이란 「 <u>군무원인사법</u> 」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4. ~ 5. (현행 ~~제2호~~ ,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u>군인이</u>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u>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u>군인</u> 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국가는 <u>제1항제1호 및 제2호</u> 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u>군인</u> 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 - <u>군인 및 군무원이</u> ----- ----- ----- <u>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u> 및 <u>군무원(국방부장관이 정한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말한다)</u> ----- ----- ----- <u>군인 및 군무원</u> ----- ----- ② ----- <u>제1항</u> ----- ----- ----- <u>군인 및 군무원</u> ----- ----- -----.

□ 현행법상 군 숙소 제공 등 군 주거지원 정책은 ‘군인’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군무원’의 경우에는 훈령 등에 근거하여 장기공실이 예상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가용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있음.³⁾

이와 관련하여 군무원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주거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주로 주둔하는 읍·면 지역에는 공단의 주택공급이 적고, 전국단위 인사교류 대상이 되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공단의 임대주택에 한번 입주하게 되면 다음 전출지에서는 3순위 이하가 되어 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표 1] 군무원·경찰·소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 이용 현황

(단위: 세대)

구 분	운영세대	군무원 입주세대	경찰 입주세대 (해양경찰 포함)	소방공무원 입주세대
공무원 임대주택	15,696 (100%)	212 (1.4%)	2,701 (17.2%)	1,429 (9.1%)
임대 후 분양아파트	247 (100%)	5 (2.0%)	36 (14.6%)	17 (6.9%)

※ 자료: KIDA,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 방안 연구」, 2021.

3)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5조(시설관리 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또는 간부 숙소가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국방대학교수, 국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 고용 인력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입주 조건은 제10조 제1항을 준용하며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입주 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되, 입주자가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퇴직 등 퇴거사유 발생 시 퇴거기한은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제36조(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⑦ 각 군 등의 장은 격오지(GOP 지원부대, 서북도서 등) 군무 군무원에 대해 주거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숙소가 지원되고 있으며,⁴⁾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⁵⁾로서 관사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⁶⁾

□ 이에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격지·오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등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군무원의 복무만족도를 높여 원활한 군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최근 국방부는 국방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의 제고를 위해 비전투 분야 군무원 정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⁷⁾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⁸⁾하고 있는 등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군무원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주거지원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고 군무원을 제외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직원숙소 지원)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5)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9조(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5.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차량 및 관사 지원

6)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임용·인사·예산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음.

7) 군무원 정원 : ('17년) 2.6만명 → ('21년) 4.0만명 → ('25년) 4.7만명

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격오지 근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군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켜 직무만족도 저하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도 우려되는 실정임.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320명 대상)의 99.2%가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83.7%는 시급하게 군무원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⁹⁾ 군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복무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제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군인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¹⁰⁾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군인이 아닌 군무원의 주거지원 제도를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¹⁾

9) 【참고자료: 군무원 주거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조.

10) 「군인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현재 군무원 복지정책을 규정하는 법률은 부재함. 따라서 군무원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의 전면 개편(법률명 변경 포함) 또는 군무원 복지 관련 법률 신규제정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음.

한편, 군숙소의 노후화 및 부족 등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개정안에 의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될 경우 군인은 현재보다 더 부족한 주거지원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군인의 주거지원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표 2] 관사 및 간부숙소 보유 및 소요 현황

(2024년 1월 초 기준, 단위: 호)

	전체	노후 (A)	부족 (B)	소계 (A+B)	개선 중	개선 필요
관사	73,908	3,530	10,256	13,786	3,753	10,033
간부숙소	107,733	18,392	6,296	24,688	17,212	7,476
합계	181,641	21,922	16,552	38,474	20,965	17,509

주. 관사 수량 73,908호는 민간주택임대지원 7,899건이 포함된 수치임.

※ 자료: 국방부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의 정원 및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주거지원으로 인해 우수인력 유출이 우려되며, 군인, 경찰·소방 등 他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므로 군무원 주거지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 군인 주거지원 제도인 ①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②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중, ②의 경우 현재 군인복지기금 재원 부족으로 인해 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과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¹²⁾에서 군무원까지 대상을 확대

12)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군인 지원인원 감축(7,899→6,951명)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이미 80% 이상 집행함에 따라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군인복지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① 관사·독신자숙소 지원만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적용하자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군무원의 경우 군인과 업무의 성격·근무조건이 상이¹³⁾ 하여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낮으며, 군무원 보수체계는 일반공무원 제도를 적용하고 업무 난이도 역시 일반공무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군무원에 대해서만 주거를 지원할 경우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임.

13) “군인과 군무원은 모두 국군을 구성하며 국토수호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특정직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헌재 2005헌마1275) 참조.

14)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의를 통해 군무원에 대한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2. 군인·군무원에 대한 주거보조비 지원

개정안은 군 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 등에 대하여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생략) 1. ~ 2. (생략) <u><신설></u> ④ <u>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주거보조비(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에 한정하여 제공한다)</u> ④ <u>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주거보조비의 지급-</u> ----- -----.

□ 현행법과 그에 근거한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자가(自家)를 보유하지 않은 직업군인의 경우 군 숙소(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이자, 월차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군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한 직업군인의 경우 임대계약 또는 공동소유 등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¹⁵⁾

15)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0조(일반관사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및 제24조(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에 따라 군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한 경우 일반관사 제공·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위기조치요원 등으로 지정된 직위에

□ 이에 개정안은 군 숙소 제공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 등에 대해 주거보조비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재원부담 뿐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군인 외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바, 이러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현행 주거지원 제도에서는 군인이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군인보수법」에 따른 월 16만원의 주택수당¹⁶⁾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취지는 중복지급보다는 현행 주택수당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의 주택 임차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수당’을 ‘주거보조비’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두 제도의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보수법」을 개정하는 등 관계법령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봄.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및 군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립 위주의 주거지원 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재직하는 자 중 각 군등의 장이 승인한 경우, 임대계약 또는 공동소유 등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주거지원이 가능함. 또한 간부숙소의 경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자가 소유 시 3일 이내에 퇴거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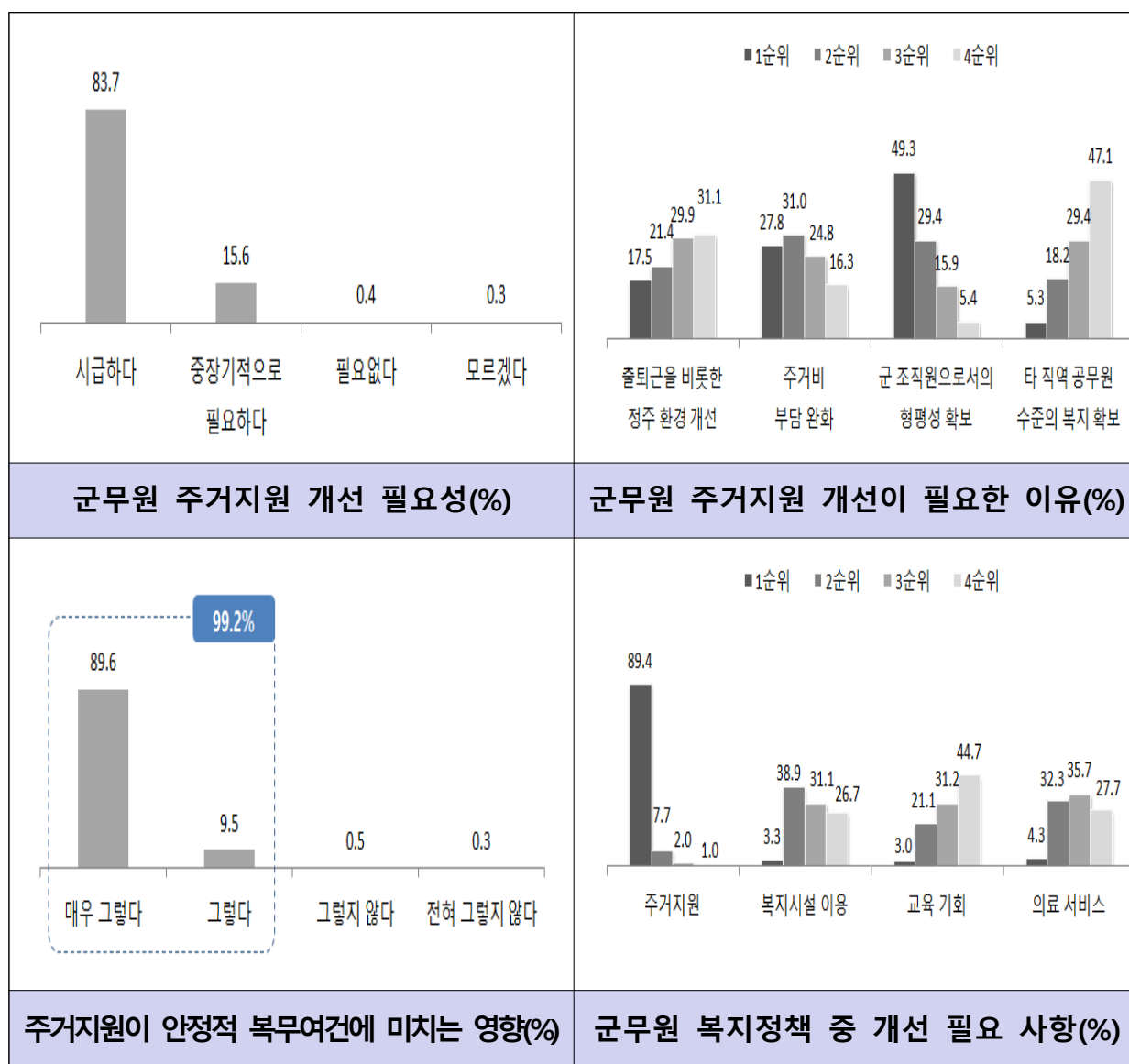
16) 주택수당은 1983년에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입되었고 1995년 이후 월 8만원 지급, 2023년부터 월 16만원으로 인상하였음. 그러나 주택 임차료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주택수당 금액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임.

군인의 경우 군숙소가 아닌 주거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현재 건립된 군숙소의 운용률 저하 및 이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군무원에 대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주거지원 제도 확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주거보조비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 및 군무원으로 대상 확대시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군무원 주거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자료: KIDA,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 방안 연구」, 2021.